

# 정관 변경(안)

## I. 변경이유

- ‘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’ 근거 법령 변경 내용을 「정관」에 반영하고자 함
- 기본재산 목록에 2022년 결산 재무제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 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정관에 기본재산(출연금) 목록 기재 의무화

## II. 주요내용

### 1 보증한도 8억원 초과 지원 근거 조문 정비

- ‘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’ 근거 법령 변경 내용을 「정관」에 반영
  - ‘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’을 규정하던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가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(’21.7.27. 제정)로 이관

####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##### ■ 제6조(육성계획의 수립)

- ① 시·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~ ⑦ 기재생략
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1.7.27.)에 따라 '지방중소기업'이 '지역중소기업'으로 변경

구 분	현 행	변 경 (안)
제2조 (목적)	·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시의 <u>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</u> 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,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·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시의 <u>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</u> 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,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4조 (보증의 한도) 제2항	(원칙) 8억원 이내 (예외) 「 <u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</u> 」 제62조의15에 의한 <u>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</u> 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따로 정할 수 있음	(원칙) 현행과 동일 (예외) 「 <u>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제6조에 의한 <u>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</u> 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따로 정할 수 있음

## 2 기본재산 목록 개정 (별지)

### □ 재단 기본재산 목록 '별지' 개정

- 회계법인 감사 및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 '2022년 결산재무제표' 상 기본재산 목록 기재

#### ※ '재무상태표' 주석14(기본재산)

- 재단의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시의 서울특별시 출연금과 재단 설립 후 서울특별시 및 국내 각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정관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
<별지> 기본재산 목록

[사업자보증]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출연기관	금액(2022.12.31.기준)
설립시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
출연금	서울특별시	548,740,466
	대한민국정부	166,273,831
	자치구	75,860,000
	금융회사 등	791,556,585
	소 계	1,582,430,882
합 계		1,632,430,882

[개인보증]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출연기관	금액(2022.12.31.기준)
출연금	서울특별시	24,000,000
	대한민국정부	8,000,000
	소 계	32,000,000
합 계		32,000,000

III. 시행일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이 있는 날

【붙임】 정관 변경 전·후 대비표 1부. 끝.

【붙임】

## 정관 변경 전 · 후 대비표

현 행	변 경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정 관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제1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2조(목적)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고 한다)에 소재하는 시의 <u>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</u>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,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다만,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이라 한다) 제5조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외의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~제6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장 임 원</b></p> <p>제7조~제14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장 이사회</b></p> <p>제15조~제21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4장 업 무</b></p> <p>제22조~제23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24조(보증의 한도) ①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② 재단이 동일한 소기업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8억원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으로부터 「<u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62조의15의 규정에 의한 <u>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</u>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소기업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정 관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제1조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>제2조(목적)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고 한다)에 소재하는 시의 <u>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</u>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,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다만,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이라 한다) 제5조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외의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보증의 한도) ①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>② 재단이 동일한 소기업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8억원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으로부터 「<u>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6조에 의한 <u>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</u>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소기업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및</p>

현 행	변 경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의 승인을 얻어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 최고한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25조~제27조의3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5장 회 계</b></p> <p>제28조~제35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6장 해 산</b></p> <p>제36조~제37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~22)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&lt;별표1~2&gt;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&lt;별지&gt; 기본재산 목록</p> <p>[사업자보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출연기관</th> <th>금액(2021.12.31.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설립시 기본자산</td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0,000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출연금</td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495,340,466</td> </tr> <tr> <td>대한민국정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32,135,249</td> </tr> <tr> <td>자치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61,150,000</td> </tr> <tr> <td>금융회사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723,611,676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412,237,391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계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462,237,39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개인보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출연기관</th> <th>금액(2021.12.31.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출연금</td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4,000,000</td> </tr> <tr> <td>대한민국정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8,000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2,000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계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2,00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1.12.31.기준)	설립시 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	출연금	서울특별시	495,340,466	대한민국정부	132,135,249	자치구	61,150,000	금융회사 등	723,611,676	소 계	1,412,237,391	합 계		1,462,237,391	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1.12.31.기준)	출연금	서울특별시	24,000,000	대한민국정부	8,000,000	소 계	32,000,000	합 계		32,000,000	<p>시장의 승인을 얻어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 보증 최고한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(23)</b></p> <p><u>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&lt;별표1~2&gt;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>&lt;별지&gt; 기본재산 목록</p> <p>[사업자보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출연기관</th> <th>금액(2022.12.31.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설립시 기본자산</td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0,000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출연금</td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48,740,466</td> </tr> <tr> <td>대한민국정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66,273,831</td> </tr> <tr> <td>자치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75,860,000</td> </tr> <tr> <td>금융회사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791,556,585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582,430,882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계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632,430,88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개인보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출연기관</th> <th>금액(2022.12.31.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출연금</td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4,000,000</td> </tr> <tr> <td>대한민국정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8,000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2,000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계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2,00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2.12.31.기준)	설립시 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	출연금	서울특별시	548,740,466	대한민국정부	166,273,831	자치구	75,860,000	금융회사 등	791,556,585	소 계	1,582,430,882	합 계		1,632,430,882	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2.12.31.기준)	출연금	서울특별시	24,000,000	대한민국정부	8,000,000	소 계	32,000,000	합 계		32,000,000
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1.12.31.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립시 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금	서울특별시	495,340,46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한민국정부	132,135,24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치구	61,1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금융회사 등	723,611,67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소 계	1,412,237,3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1,462,237,3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1.12.31.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금	서울특별시	24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한민국정부	8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소 계	32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32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2.12.31.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립시 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금	서울특별시	548,740,46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한민국정부	166,273,83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치구	75,8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금융회사 등	791,556,58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소 계	1,582,430,88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1,632,430,88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2.12.31.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금	서울특별시	24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한민국정부	8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소 계	32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32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